#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22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 강경숙·최민희·황운하

김선민 • 용혜인 • 신장식

강득구 · 장철민 · 김준형

전종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선거 권이 있음.

그런데,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는 상황임.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임.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선거권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선거권) 16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다.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 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9조제1항 전단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43조의2(선거권) 16세 이상으로
	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
	에서 선거하는 교육감의 선거
	<u>권이 있다.</u>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
	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 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 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 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 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 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 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 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 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 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 (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 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 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 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 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세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u>제17조</u>
<u>- 11 1 7 - 2 - 2 - 2 - 2 - 2 - 2 - 2 - 2 - 2 -</u>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 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 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 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 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 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 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 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 2, 제278조, 제279조 중 시 · 도 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